

#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

제 정 : 2020. 2. 17.  
개 정 : 2020. 9. 24.  
개 정 : 2021. 2. 15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근거 및 목적)**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
2. 임용일 현재 만65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

**제3조(임용일)** 강사의 임용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. 다만, 제4조에 따라 학기 중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일을 달리할 수 있다.

**제4조(임용기간)**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1.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연구년(6개월 이하)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·퇴직·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
2.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

## 제2장 신규임용 및 재임용

**제5조(교원인사위원회)**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강사의 신규임용과 재임용 동의
2. 비위행위가 있는 강사의 면직 동의
3.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
4. 그 밖의 강사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

**제6조(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)**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강사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임용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통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전공영역과 교양영역을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심사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7조(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)** ① 강사의 재임용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재임용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심사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8조(신규채용 절차)** ① 총장은 담당 과목명, 배정시간, 채용인원, 지원자격, 심사기준,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최소 5일 이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 이 경우 학문후속세대(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등을 말한다)의 강사임용기회 보장을 위해 분야별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강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통합하여 운영하거나, 임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.

③ 임용심사위원회는 강사 신규임용 기초·전공심사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고, 총 점수 순에 따라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로 총장에게 추천한다.

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추천한 임용 예비 순위자를 포함한 신규강사의 임용 동의를 심의한다.

⑤ 총장은 최고 득점자가 임용을 포기(3회 이상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한 때에는 차 순위 득점자를, 차 순위 득점자가 임용을 포기한 때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.

**제9조(신규채용 지원서류)**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사람은 지원자격의 확인, 기초·전공심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강사임용지원서
2. 강의계획서
3. 기타 채용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

**제10조(계약제 임용 등)** ① 총장은 임용기간, 강의시간, 강의에 따른 인건비, 근무조건, 면직사유, 재임용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강사를 임용한다.

②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·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, 그 이후는 다시 신규임용하거나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. 다만, 제4조에 따라 1년 미만으로 강사를 임용한 때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강사의 경우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만료사실을 통보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강사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
⑤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신청한 해당 강사에 대해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.

⑥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·의결하고, 총장은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⑦ 제6항에 따라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강사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,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⑧ 강사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거나,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.
- ⑨ 강사를 신규임용하거나 재임용할 때에는 강사 임용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1조(재임용 평가)** 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. <개정 2020. 9. 24.>

- 1. 강의계획서, 성적입력 등 기한 준수 여부
  - 2. 강의계획(작성)의 적절성
  - 3. 수업품질 개선보고서(CQI) 작성 여부
  - 4. 강의평가 결과
  - 5. 휴·보강 준수 여부
  - 6.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참여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, 청렴교육 등)
- ②제1항의 항목별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. <신설 2020. 9. 24.>

**제12조(면직사유 등)**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를 면직시킬 수 있다.

- 1. 신규채용, 재임용 평가 시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
- 2.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
- 3.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, 성적입력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4. 소속 학부(학과, 전공)이 폐지된 경우
- 5.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
- 6. 품위손상의 정도가 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- 7. 기타 임용계약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- 8. 제11조에 의한 재임용 평가 결과 조건부 재임용이 연속 2회 또는 누적 3회일 경우 <신설 2020. 9. 24.>

**제13조(당연퇴직)**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- 1. 사망한 때
- 2.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강사. 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.
- 3.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·정직 등을 포함하여 총 3년이 도래한 때
- 4. 재임용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<신설 2020. 9. 24.>

### 제3장 처우 및 의무

**제14조(강의시간)** 강사는 학기별로 매주 6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5조(근무조건 및 복무 등)** ① 강사는 본교의 교육이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강사의 사회보험(국민연금·국민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 적용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. <개정 2021. 2. 15.>

③ 강사는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④ 강사는 담당 교과목을 강의하여야 하며,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.

1. 수업과 관련된 문서(강의계획서, 평가계획서,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, CQI 보고서 등) 작성
2. 수업시간 내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상담 및 지도
3.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이수
4.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교육과 연계되는 사항

⑤ 퇴직금은 교육부의 강사 처우개선 사업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총장은 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2. 15.>

**제16조(휴직)** ① 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.

1. 신체상·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
2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전시·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
4.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
5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

②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**제17조(세부사항)**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강사는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.
3.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「시간강사 운영지침」은 폐지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19년 9월 1일 이후 임용된 강사는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15조의 ②항, ⑤항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( '19.8.1.)에 의해 신규임용된 강사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 재임용 심사 기준

항 목		배 점	평가기준										
1-가. 강의계획서 입력 기한 준수	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</li> <li>- 모든 교과목을 기한 내 입력 시 5점</li> <li>- 기한 내 미입력 교과목이 1개 이상인 경우 2점</li> </ul>										
1-나. 성적 입력 기한 준수	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</li> <li>- 모든 교과목을 기한 내 입력 시 5점</li> <li>- 기한 내 미입력 교과목이 1개 이상인 경우 2점</li> </ul>										
1-다. 강의계획(작성)의 적절성	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</li> <li>■ 강의계획서 작성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</li> <li>- 모든 교과목의 작성 지침 준수 시 10점</li> <li>- 미준수한 교과목이 1개 이상인 경우 4점</li> </ul>										
2. 수업품질 개선보고서 제출 여부	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</li> <li>■ 중간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자기분석보고서 제출 여부</li> <li>- 모든 교과목을 기한 내 제출 시 10점</li> <li>- 기한 내 미제출 교과목이 1개 이상인 경우 4점</li> <li>- 학생 미참여로 인해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5점 부여</li> </ul>										
3. 강의평가 결과		5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</li> <li>■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(5점 만점)의 평균값으로 평가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4.7 이상</td> <td>45 이상</td> <td>43 이상</td> <td>40 이상</td> <td>4.0 미만</td> </tr> <tr> <td>55점</td> <td>45점</td> <td>35점</td> <td>25점</td> <td>15점</td> </tr> </table>	4.7 이상	45 이상	43 이상	40 이상	4.0 미만	55점	45점	35점	25점	15점
4.7 이상	45 이상	43 이상	40 이상	4.0 미만									
55점	45점	35점	25점	15점									
4. 휴·보강 준수 여부	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</li> <li>■ 휴·보강계획서 제출 현황을 기준으로 임용기간 내 전체 교과목에 대해 평가</li> <li>- 휴강이 없거나, 휴강 후 보강을 한 경우 10점</li> <li>- 휴강 후 1개 교과목이라도 미보강 시 0점</li> </ul>										
5. 법정 의무 교육 참여	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내 교내에서 진행한 법정 의무교육(4대 폭력예방교육 등) 참여 여부</li> <li>- 1회 참여시 3점</li> <li>- 2회 이상 참여시 5점</li> </ul>										
가산점	6. 교육역량 개발 참여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교내에서 진행하는 교수법 향상과 관련한 특강, 프로그램 등 참여 여부</li> <li>- 1회 이상 참여 시 5점</li> </ul>										
합 계		100											

※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이 가능하며, 70점 미만인 경우 강의개선보고서 제출과 교수법 향상 관련 교육 1회 이상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임용을 할 수 있음(단, 최초임용 이후 조건부 재임용이 연속 2회 또는 누적 3회일 경우 재임용이 불가함)